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20185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고선철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합50065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2020. 9. 4. 자 250,000,000원, 2020. 9. 10. 자 2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주장 및 변론경과에 비추어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3행 “C은” 다음에 “2020. 10. 7.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의 “대출원금리금”을 “대출원리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9행의 “한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9~15행[“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한편, 제1심 법원의 마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47~55쪽)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무렵인 2020. 8.경 C은 아무런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았던 반면, 은행, 할부금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특수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5,36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주장대로 671,221,465원 상당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937,421,617원 상당의 동산 재고 등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하더라도, C은 이 사건 금원의 각 지급일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밑에서 4행의 “거액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태였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C이 2020. 10. 16.경 10월분 이자를 납부하였고, 원고가 2020. 9. 29.경 C의 원고에 대한 적금 1억 원을 해약하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마이너스 대출약정의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C 사내이사인 E의 아내인 사실,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무렵 C이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2020. 10. 7.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C은 2020. 5.경부터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도 하였던 사실, ‘C 대표자 E가 2020년 9월 중순경 C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수십억 원을 챙겨 야반도주하였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마이너스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C과 C 대표자 사내이사 E의 아내인 피고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6행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2020. 2. 29. C에서 퇴사하였으므로 C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29.경 C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에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에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정황에다가 피고는 2020. 3. 4.경 남편인 C의 사내이사 E와 경리과장 J로부터 ‘회사가 위기에 빠졌으니 회사를 살려달라’는 취지의 간청을 수차례 받았던 사실, 당시 J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자 약정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2020. 7. 18.자 항소이유서, 2022. 10. 11. 자 준비서면)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가 C의 경영상 사정 및 재정상태를 몰랐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밑에서 8~9행 “이 사건 금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과 동일한 변제의 의사였다고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는, C이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게 2020. 7. 1.부터 2020. 9. 30.까지 총 2,098,403,407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에게도 2020. 9. 말경 193,311,022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채권 채무

거래 내역'(을 제30호증)2)에 따르더라도, C은 2020. 9.경 그 자금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그 무렵 매입채권 139,383,677원에 대한 변제를 제외하고 금융기관들에 변제한 금액은 총 45,337,774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그 무렵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가 50억 원을 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단일 채권자인 피고에게 45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위 변제금액은 잔존 대여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피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대여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위 변제행위가 위기 상황에 있던 C의 경제적 갱생 또는 재건을 위한 조치로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는 C이 2020. 9. 15.부터 2020. 9. 18.까지 제3자로부터 받을 합계액 749,680,056원 상당의 채권과 32,574,690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다른 채권자인 거래업체에 양도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자신이 소유한 채권 및 재고자산을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양도받은 채권의 실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될지 불확실하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7행의 “추정된다”를 “추정되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3)

재판장 판사 김봉원, 판사 강성훈, 판사 권순민

1) 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C은 그 임원이 E와 피고로만 구성된 가족회사로 보인다.

2) 피고에 대한 450,000,000원 변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피고는 2022. 11. 9. 참고서면과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 2020. 4. 29. 자 대여금 4억 5천만 원의 출처와 을 제30호증 '채권 채무 거래 내역'의 객관성을 증명하려 하니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점들이 증명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C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